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8. 9. 29(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8. 9. 29(월) 10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최영록(2150-4110)	담당자	배정훈 사무관(2150-4111)

제목: '08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

지난 9.1(월)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("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")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,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음

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조정

- 세율 : (당초) 순매출액의 20% → (수정) 순매출액의 10%
-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(1~10%) : (당초) 폐지 → (수정) 유지
- ※ 이유 :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되, 관광기금 부담금은 존치

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* 일몰연장

- *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)가 출자·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0% 감면
- 일몰 : (당초) '08.12.31 → (수정) '09.5.7
- ※ 이유 : CRC제도가 「산업발전법」상 '09.5.7일 폐지될 예정임을 감안

이번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(개정 14개*, 폐지 3개, 총 17개)은 9.29(월) 차관회의, 9.30(화) 국무회의를 거쳐 10.2(목) 정기국회에 제출

* 당초 교육세법은 개정('09년 시행)과 폐지('10년 시행)를 함께 담은 '폐지법률안 1개'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, 개정 및 폐지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2개 법률안 제출

참고로 이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는 9.18 국회 통과 법률의 후속 조치 및 양도세 개편안 조기 시행 등을 위한 5개 세법시행령*도 함께 상정

*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특법, 교통세법, 국제조세조정어관한법률 시행령

기획재정부 대변인